

선학, 연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05. 30(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 05. 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1순위)에 현장접수(**거주지역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사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	--

1. 임대단지 개요

단지명	위 치	호 수	건축 준공일	구조 및 난방
선학 영구임대	연수구 선학로 14	1,300	1993. 06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연수 영구임대	연수구 원인재로 222	1,000	1992. 04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50년 이상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임)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단지명	전용면적 (㎡)	건설호수	임대조건				모집할 예비자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가」군 (생계·의료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가」군 (생계·의료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선학 영구임대	32.28	198	3,146,000	4,625,000	55,200 ~ 62,600	57,900 ~ 64,800	250
	40.00	198	3,899,000	5,805,000	68,500 ~ 77,600	72,800 ~ 81,200	250
연수 영구임대	26.37	702	2,570,000	3,917,000	43,100 ~ 51,100	46,300 ~ 53,500	100
	31.32	149	3,053,000	4,575,000	51,200 ~ 60,700	54,100 ~ 62,600	200
	40.32	149	3,930,000	5,657,000	66,000 ~ 78,200	67,600 ~ 78,400	200

※ 각 층별 임대료는 차등 부과되며,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3. 신청자격”을 참고)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5. 30.)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상기 모집인원은 현재 입주 가능한 공가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의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평형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26.37㎡	31.32㎡ / 32.28㎡	40.00㎡ / 40.32㎡
가구원수	1인~2인 이하 가구		2인 이상 가구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05. 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액의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집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2,347,719)원이하	(3,018,496)원이하	(4,024,661)원이하
	2인가구	(3,003,226)원이하	(4,004,301)원이하	(5,505,914)원이하
	3인가구	(3,359,099)원이하	(4,702,739)원이하	(6,718,198)원이하
	4인가구	(3,811,028)원이하	(5,335,439)원이하	(7,622,056)원이하
	5인가구	(4,020,246)원이하	(5,628,344)원이하	(8,040,492)원이하
	6인가구	(4,350,820)원이하	(6,091,147)원이하	(8,701,639)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5,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p>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p> <p>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p> <p>•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p>
부채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p> <p>• 공공기관 대출금</p> <p>•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p> <p>•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p> <p>•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p>
자동차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p> <p>•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p>-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p> <p>•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타목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p>·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p> <p>·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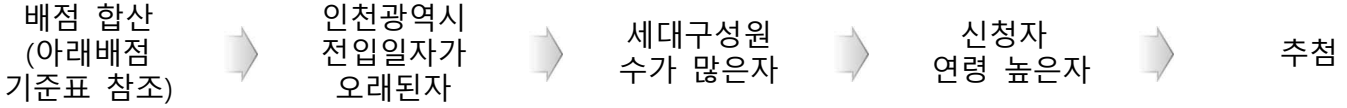
	5)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u>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u>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u>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u>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u>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입주대상자 선정순위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사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13 (유형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5. 모집일정 및 선정절차

■ 모집일정

신청기간	서류접수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안내
2023.06.19.(월) ~06.21(수)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선학	2023.10.12.(목)
		연수	2023.10.13.(금)
(17:00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개별 통보 (기존 대기자 소진완료 후 금회 모집세대 순번대로 계약체결)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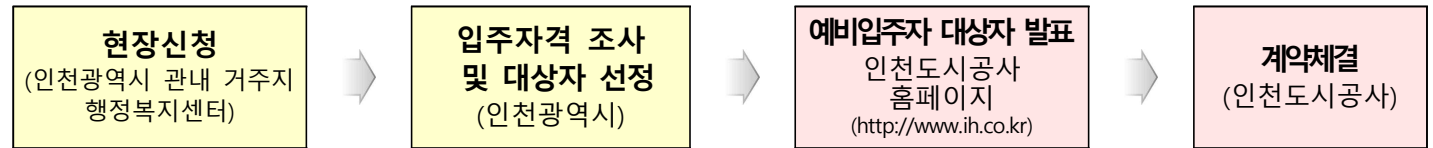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 05. 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5.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 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해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1통

당 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i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자산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u>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모집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구분	유의사항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p>(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확정된 후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복 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 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iH가 입주인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p>※ 계약 전 지구 및 단지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구분	유의사항
----	------

지구 및 단지 여건

■ 구역여건

- . 단지 주변 건축물 신축·재건축·재개발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도로에 인접한 동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의한 소음, 먼지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으로 선학중학교 등이 배치되어져 있으며, 이에따라 단지 내부 도로가 통학로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지 남동측과 북서측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보행로가 단지과 연결되어져 있어, 생활 소음 발생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계약 전에 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을"(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을"은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재건축·재개발 등,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본 공동주택은 준공당시 법령·규칙 등에 따르며, 각종 인증·기준·평가·설계·계획·협의사항 등이 현행기준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에 따라 일부 벽체의 단열 종류 및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전 세대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리 및 물리적인 구획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본 단지(아파트)의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실제 면적이 소폭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계단실 공용면적은 동 타입별 공용 면적의 합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사용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iH에 귀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대지면적을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 실제 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대지 지분정리 등에 따라 건축물 배치,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설계 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과 접해 있으며 단지 외부로부터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의는 반영 불가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외의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등)는 지자체 등의 재개발 또는 기반시설 설치

구분	유의사항
	<p>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주택단지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벽 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채 등)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출입구, 동현관,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경관 조명 등 외부 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을"(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는 외관향상 또는 기능적인 목적의 장식물, 경관조명 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등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철거, 이전은 불가 합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련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동 저층부(1~3층) 외벽 마감은 추후 특화 디자인 계획이 적용될 경우, 석재·석재뿔칠·도장 등이 혼용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단지 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환기구, 조명시설, 가스 정압시설, 휴게소,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문주,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광장 등 의 위치와 크기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 또는 저층세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단지 내 시설물(아파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및 기타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로 인해 동별, 향별, 층별로 소음, 일조, 조망, 냄새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여건이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경계부에 주변 도로와 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행통로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소음 발생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제외하고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과 연계되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측에 인접한 동은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는 보차혼합로이기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부대시설과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되어져 있기에 혼잡과 통행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내 도로의 진출입구와 북측과 남측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돌출된 지하 기계/전기실 D.A., 채광창(탐라이트),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상부층 및 인접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주 동 진입구는 동 코어(중심부 계단실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배치와 층 높이, 식생수목 여건 등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계약자) 편의를 위하여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단지 주출입구 등 설치)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은 지하 1개 층이며,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경사로가 발생되며, 주 동으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별도 분리형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준공 당시 기준대로 산정되어있음.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 지하주차장, 지하부분 연결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의 주차 구획까지의 동선거리 등이 다르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탁실은 비단열 공간으로, 세탁실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선학 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연수 주택단지는 해당사항 없음)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아파트 단지명(브랜드)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시설개선사업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추가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을"(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의 난방은 중앙난방 방식입니다. . 복도식주택의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내부, 각 동의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 함, 단지내부보행로(일부) 등의 위치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출입구에 자동문은 설치되어있으나, 공동현관기(로비폰) 등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 추후 설치될 수 있는 무인택배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을"(계약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명(공용조명, 단지 홍보용사인물 등)이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

-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iH가 결정합니다.
- . 주 동 옥상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었으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 중입니다.
- .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동 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엘리베이터 준공당시 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되었습니다.
-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변경 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지반(공급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내부 포장 재질 및 형태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시공과정 등에 따라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휴게, 놀이, 운동, 편의 및 혐오시설 등 포함)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명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재활용품보관창고,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시공범위·구간·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을"(계약자)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재료 또는 재질 및 시공범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자전거 보관 시설 등은 추후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생활폐기물보관소는 각 주동의 주변 생활동선 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 대상 주택]

-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정부(국토교통부 등), 지자체(인천시) 및 iH에서 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 중 공사시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세대는 비대상세대와 비교하여 자재 등 품질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기타사항

- . 세대 바닥구조는 준공당시 법·령·규칙 등의 기준의 구조로 시공되어있습니다.
- . "을"(계약자)의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과도한 음식물 조리 등) 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인한 세대 내부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 증기량 증가(상대습도 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및 난방가동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함을

구분	유의사항
	<p>명확하게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세대는 단위세대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로 결로 발생에 취약한 경우 개별적인 보안을 해야 하며, 추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다용도실 가구 포함)로 인하여 가려지는 면(천장, 가구뒷면, 옆면, 바닥)과 욕실장, 욕실거울,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수납장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등)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 또는 벽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세대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유형 또는 층에 따라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세대 타입 유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의 인조대리석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의 경우, 발생하는 접합 이음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을"(계약자)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며, 외부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어 입주 후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시 구조대기를 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접세대와 접한 발코니의 세대 경계벽은 조적 및 경량벽체구조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창문개방 시 풍향 등의 영향을 받아 외벽 환기구로부터 창문을 통하여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기 온도차에 따른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될 수 있음. . 고정형으로 설치되는 가구에 접하는 부위는 바닥, 벽, 천정 마감재가 미시공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별 서비스 면적, 가구, 수납공간의 크기 및 마감재는 서로 상이한 바,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몰딩, 걸레받이 등과 인테리어 시트 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줄눈 및 접합부 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전체 규모,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각각의 규모, 마감재(주요 바닥, 벽체, 천정 마감, 타일, 석재, 석재뿔칠, 도장 마감 중 택일)는 시공사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추후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어있고,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단지 내 화단 등 포함)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을"(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i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30.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본인(또는 배우자)은 _____단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_____년 _____월 _____일

확 인 자
(임 차 인)

_____ (서명 또는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 00시도지사 / 00시상군수구청장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 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인천도시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지 4호 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증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m ²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input type="checkbox"/> 일본군위안부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정신장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3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공사 귀하</p>					

[별지5호]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추가/예비입주자용공급-뒷면,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_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3점	2점	1점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 재혼 시 전혼자녀 포함(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한함) ※태아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기준으로 산정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4		
	5년 이상~10년 미만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input type="checkbox"/>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유형8: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input type="checkbox"/>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유형8: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예비입주자중복불가사향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증빙서류
--------	--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선학, 연수 영구임대 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